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25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25년 6월 9일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25년 6월 9일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온라인 방청예약시스템을 도입하며, 신청인 및 동반자 정보입력 최소화로 예약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「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」 제85조(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) 제4항 개정

3. 개정규칙안 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- 규칙안예고 : 해당없음
- 관련부서 협의 : 해당없음
-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의회규칙 제 호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5조 제4항 중 “방청권에 주소, 성명, 직업, 연령”을 “신청서에 신청인 및 동반자의 성명, 휴대전화, 방청 목적”으로, “기재하여야”를 “기재해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5조(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) ① ~ ③ (생 략) ④ 방청인은 <u>방청권에 주소, 성명, 직업, 연령 등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여야</u> 한다.	제85조(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신청서에 신청인 및 동반자의 성명, 휴대전화, 방청 목적 ----- <u>기재해야</u> ----.

관련법령 발췌

【지방자치법】

제83조(회의규칙)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【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】

제57조(회의규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의 운영 ·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」에서 따로 정한다.